



일본의 NISA 제도 시행과 시사점

금년 1월부터 일본에서는 영국의 개인저축계좌(ISA)를 본떠 만든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가 시행되기 시작함. ISA는 투자대상 금융상품으로 예금과 채권도 포함하고 있는 반면 NISA는 주식투자 금융상품만 포함하는 차이를 보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이나 영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가계의 안정적인 자산형성 지원과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됨.

- 금년 1월부터 일본에서는 「소액투자비과세제도(少額投資非課税制度, 일명 NISA: 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시행되기 시작함.
 - NISA는 영국의 개인저축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부분적으로 본떠 만든 것으로, 연간 100만엔(약 1,000만원)까지 상장주식 및 공모주식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배당수익을 비과세하는 제도임.
 - * ISA와 NISA 간의 가장 큰 차이는 투자대상 금융상품으로, 전자는 예금과 채권도 포함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주식만 포함하고 있음.
 - NISA는 가계의 안정적인 자산형성 지원과 성장자금의 공급확대, 장기투자자 기반 확충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 세제개정을 통해 도입이 확정됨.
- 전용계좌 신청 개시일인 작년 10월 1일부터 금융기관들은 광고활동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고객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섬.
 - 특히 일본 최대의 증권사인 노무라증권(野村證券)은 고객에 대한 정보발신 강화 차원에서 영업기획부 산하에 ‘노무라NISA팀’을 설치하고 공개토론회, 대형 세미나의 기획·입안·운영, 투자자 상담 등에 주력하고 있음.
 - 투자처인 기업들도 NISA의 운용자금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주주우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최저투자금액을 낮추기 위해 주식분할(stock split-up)을 실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 * 주주우대제이란 주주 증시의 경영 이미지 개선 및 적극적인 소액주주 확보를 목적으로 양도차익이나 배당수익과는 별도로 자사 제품의 할인 및 상품권 지급 등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NISA 계좌의 최대 이점은 연간 100만엔까지 투자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전 증여의 경우 110만엔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장년층에서 청년층으로의 자금이전을 촉진하고 청년층의 금융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데 있음.



- 그런데 NISA 계좌는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과세계좌와 달리 계좌간의 손익 합산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 그러므로 NISA 계좌는 투자손실 발생을 피할 수 있는 자산운용 방식이 요구됨.

- 가계의 노후 퇴직생활 보장을 위한 자산형성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기금, 사적연금인 기업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서민이나 중산층에 대한 장기저축 형성지원 등 세제우대조치가 적용되는 다양한 제도의 활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음.
 - 국민연금기금은 물론 기업연금인 확정기여형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역시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형성에 초점을 맞춰 납입금 소득공제 등 NISA 이상으로 세제상 우대되는 측면이 있어 최적의 자산관리조합이 요구됨.

〈표〉 NISA, DC, 국민연금의 비교

	NISA	DC				국민연금
		개인형		기업형		
적용 대상자	20세 이상 국내 거주자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	기업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종업원	도입기업의 종업원 (여타 기업연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도입기업의 종업원 (여타 기업연금이 존재하는 경우)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
연간납입 한도액	100만엔	81만 6,000엔 (월 6만 8,000엔)	27만 6,000엔 (월 2만 3,000엔)	61만 2,000엔 (월 5만 1,000엔)	30만 6,000엔 (월 2만 5,500엔)	81만 6,000엔 (월 6만 8,000엔)
세제우대	운용이익 비과세	납입금 소득공제, 운용이익 비과세, 연금수급 시 과세				
인출기간	중도수시 인출가능	원칙 60세 이상				원칙 65세 이상

주 : 1)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제1호 피보험자(자영업자와 학생 등), 제2호 피보험자(민간기업 피고용자와 공무원 등), 제3호 피보험자(민간기업 피고용자나 공무원 아내 등)로 구분되고 있음.
 2) 개인형 DC와 국민연금기금 납입금의 합계액은 월 6만 8,000엔까지임.
 3) 2014년도 세제개정 요강에 따르면 여타 기업연금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형 DC 납입금은 월 5만 1,000엔에서 월 5만 5,000엔으로, 여타 기업연금이 존재하는 기업형 DC 납입금은 월 2만 5,500엔에서 월 2만 7,500엔으로 인상될 예정임.

- 향후 최대 관심사는 NISA의 영구화 조치 여부임.
 - NISA 제도의 존속기간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음.
 - 영구화 조치 여부는 NISA 제도가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 특히 청년층의 NISA를 통한 금융기관과의 자산운용 거래가 얼마나 촉진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음.
 - 당초 영국에서도 지난 1999년 ISA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매년 계좌개설이 증가하고 장기저축 형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2007년에 영구화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음.
 - 2011년부터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주니어(Junior) ISA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만 18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성인 대상의 ISA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에 초점을 맞춰 비과세 재형저축(펀드)이나 소득공제 장기펀드 제도 등이 도입되고 있으나, 일본이나 영국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소기의 목적 달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됨. **KIF**